

#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안연월일 2022. 7. .

제안자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탁운영)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관련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(위탁운영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 및 제7조(의회의 동의)

### 나. 위탁운영 목적

-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(법인·단체)에 위탁 운영 하여 우리군 장애인들에게 교육·상담, 정보제공, 역량강화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다. 시설현황

(단위 : 천원, m<sup>2</sup>, 명)

세부시설명	위 치	2022년 지원예산	건축 연면적	종사자	비고
복지센터	진부면 진별1길 144-19	83,060	1,423.36	1	지하1층/ 지상2층
어울림체육센터	진부면 경강로 3817	-	498.99	-	지상1층

## 라. 입주 단체(시설)현황

구 분	지체장애인협회	시각장애인협회	농아인협회	비고
층 별	1층	1층	2층	
기관명	장애인 종합상담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교통약자편의지원센터	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가립지원 센터	수어통역센터	

## 마. 위탁계획

- 시설명 :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
- 대상사무 :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- 위탁기간 : 2022. 09. 01. ~ 2027. 08. 31.(5년)
- 위탁단체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 법인·단체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 심사 후 결정

## 바. 위탁조건

- 위탁범위 : 센터 운영, 안전, 위탁시설 장비 등 유지·관리
- 예산지원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 등

## 사. 향후 추진일정

-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단체 공모 : 2022. 7월
-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: 2022. 8월
- 장애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: 2022. 9. 1. ~ 2027. 8. 31.(5년)

## 아.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기반 마련

## 3.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 □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1조(위탁운영)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(이 조에서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<개정2021.12.31.>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·수탁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2021.12.31.>

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재 위탁 할 수 있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<개정 2019.4.12.>

② 군수는 재 위탁 또는 재 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